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규정 제193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원장”을 각각 “강원학사운영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75명(남135, 여140)”을 “268명(남122, 여146)”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재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에 한함)”을 “재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생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에 등록된 대학원생(석사과정에 한함)이 입사할 수 있다.

제6조제4호 중 “이사장”을 “강원학사운영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

6. 자립준비청년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칙” 을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생수칙)” 을 “(사생 생활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칙” 을 “규칙”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운영) ①·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휴사할 수 있으며, 휴사기간은 <u>원장이 따로 정한다.</u></p> <p>1. 2. (생 략)</p> <p>3. 시설 보수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u>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조(입사정원) ① 입사정원은 관악 학사 <u>275명(남135, 여140)</u>·도봉학사 204명(남92, 여112)이내로 하되, 학사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제5조(입사자격) ① 학사에 입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u>의한 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에 한함)으로 한다.</u></p> <p>1. 2. (생 략)</p> <p>②·③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p> <p>1. ~ 3. (생 략)</p>	<p>제3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강원학사운영부장-----.</u></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강원학사운영부장-----</u></p> <p>제4조(입사정원) ① ----- 학사 <u>268명(남122, 여146)</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사자격) ① ----- ----- <u>따른 ----- 재학생-----</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생 선발 후 결원 발생시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에 등록된 대학원생(석사과정에 한함)이 입사할 수 있다.</u></p> <p>제6조(입사자격의 제한) ----- ----- -----.</p> <p>1. ~ 3. (현행과 같음)</p>

4. 이사장이 정한 학사내 금지행위를 하여 부과한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여 퇴사조치 된 자

5. ~ 8. (생략)

제8조(신입사생 선발기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점수에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복가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선발인원 확정을 위해 신입사생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인으로 위촉한다.

2. (생략)

제14조(퇴사 및 휴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사의 기준은 수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생수칙) 사생의 권리 및 의무, 징계, 자치활동 등 학사내의 생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수칙으로 정한다.

4. 강원학사운영부장-----

5. ~ 8. (현행과 같음)

제8조(신입사생 선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

6. 자립준비청년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4조(퇴사 및 휴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칙-----
-----.

제15조(사생 생활규칙) -----

----- 규칙-----.